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1-----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 11. 22

다. 상정일자 : 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2. 5)상정

제4차 총무위원회(2005.12.14)상정. 채택

2. 제안설명요지(황해룡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 1. 1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채택되고, 감사청구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를 “200명으로”조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현재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50만 이하의 시·군·구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라고 개정된 것을 볼때 본 조례 제2조 중 “..... 200명이상이어야 한다”를 “.....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법조문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 개정안대로 “200명으로한다”고 한정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이뜻은 정확히 200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그 이하라는 뜻으로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부산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 ----- ----- -200명으로-----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 할 <u>최소주민의</u> 수는----- ----- ----- <u>180명으로</u> --